

# 2025년도 평창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

의안 번호	519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25. 11. 26.  
제출자 : 평창군수

## 1. 제안이유

2025년도 평창군 기금운용 변경계획(안)을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하고 평창군의회 심의 의결을 받으려 하는 것임.

## 2. 주요골자

가. 통합재정안정화기금(재정안정화계정)

「평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4조에 따라 일반회계 여유재원의 기금 적립을 위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함.

마. 기금운용계획 변경내역은 다음과 같음.

(단위 : 천원)

기금명	계획액	기정계획액	비교증감
합계(9개 기금)	39,770,727	29,769,324	10,001,403
평창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 (통합계정)	81,331	81,331	0
평창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 (재정안정화계정)	21,876,111	11,874,708	10,001,403
평창군자활기금	530,813	530,813	0
평창군고향사랑기금	1,191,654	1,191,654	0
평창군체육진흥기금	2,785,943	2,785,943	0
평창군육외광고발전기금	248,244	248,244	0
평창군재난관리기금	1,714,283	1,714,283	0
평창군식품진흥기금	147,507	147,507	0
평창군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	11,194,841	11,194,841	0

### 3. 관계법령

가.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

## 관계법령 발취

### 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. 다만,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.
  1.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
  2.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
  3.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 1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
  2. 「재해구호법」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
-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.